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의자 : 박상웅 · 서일준 · 윤한홍  
권성동 · 주진우 · 신동욱  
김도읍 · 조은희 · 김미애  
배준영 · 강승규 · 이인선  
박덕흠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인 · 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,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 · 배당소득세 비과세,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 ·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,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,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.6%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.2%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

총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72조 등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“당기순이익과세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	
1. ~ 8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<u>2030년 12월 31일</u>





<p>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<u>2027년 1월 1일</u>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		----- ----- -----.  ② <u>2032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